

## ■ 공인결석

- 대상 : 출석인정이 필요한 학생
- 공인 결석 인정
  - ▷ 본인 또는 친족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: 결혼, 사망, 출산 등
  - ▷ 병원 진료 및 입원치료
    - 가. 사고 및 응급으로 인한 치료(진료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호흡기질환, 치아질환, 피부질환, 물리치료 등 경증 질환 제외) : 1일(병명이 기재된 진료확인서)
    - 나. 입원치료 : 4주 미만(진단서)
    - 다. 법정감염병 감염으로 격리 등이 필요한 경우 : 7일(공휴일포함)
  - ▷ 징병검사 등 병역의무, 예비군 동원·훈련 참여로 인한 사유 : 해당기간 (예비군 훈련 기간 동안 출결,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며, 수업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수업 보충 등 학생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.)
  - ▷ 졸업시점이 6개월 미만 남은 재학생의 취·창업
  - ▷ 체육특기자의 대회출전 및 훈련 등( 수업시수의 최대 1/2까지만 인정함 )
- 공인결석(출석인정) 신청방법(학사인트라넷) : **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 신청**

No.	구분	내용
1	결석 구분	- 결석사유 선택 (경조사, 병원진료, 병사관계, 조기취업, 창업, 법정감염병, 체육특기자 대회출전, 기타 등)
2	결석일 선택	- 결석일 선택 - 규정에서 정한 공결일수 초과시 승인불가
3	결석사유 입력	- 결석사유 입력
4	첨부파일 선택	- JPG 그림파일 타입으로 업로드
5	수강정보 확인	- 수강과목 일괄 확인 클릭 후 신청 접수